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수 산 종 자 산 업 육 성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,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('21.3월)을 이행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(안 별표 1, 별표 3, 별표 4)

-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

나.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(안 별표 1, 별표 3, 별표 4)

-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~3년으로 하고,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

*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,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(과태료의 부과기준 : 2년, 업무정지의 기준 : 3년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'22.08.08.~09.19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3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

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4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다목(종전의 나목)5)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 1]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<u>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.</u> <신 설>	[별표 1]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. 일반기준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 다. <u>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</u>

다. 처분권자는 최근 3년간 수산
종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
및 교육·훈련 등을 통하여
수산종자산업에 이바지한 바
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
제2호의 개별기준(제2호가목
은 제외한다)에 따른 처분을
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
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
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
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
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3
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
할 수 있다.

[별표 3]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
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
1. 일반기준

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
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
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
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
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
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
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처분
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
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라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3]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
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.

<신 설>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

다. 처분권자는 최근 3년간 수산
종자개발기술 지원, 성분 분석
및 경영지원 실적 등을 고려
할 때 수산종자산업에 이바지
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
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(제2
호가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
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
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
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
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
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
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
로 감경할 수 있다.

[별표 4] 과태료의 부과기준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
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
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
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
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

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
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처분
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
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라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4] 과태료의 부과기준

1. 일반기준

가. -----

-----.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
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

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
날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
당한다)을 각각 기준으로 하
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.

<신 설>

나.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
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
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
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
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
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
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

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
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
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
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
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
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
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
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
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
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
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
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
반영하지 않는다.

다. -----

-----.

1) -----

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	2) ----- ----- --
3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3) ----- -----
4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	4) ----- ----- -----
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5) ----- ----- ----- ----- 인정하는 --
<u>다.</u>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	<u>라.</u>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83